「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가.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는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밀착 지원하고 기술 사업화 연계를 촉진하는 집적형 창업지원 거점으로서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함.

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사업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가)「지방자치법」제117조

나)「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4조, 제6조

다)「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제15조

라)「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2) 필요성: 기업 발굴, 선정, 사업관리, 컨설팅, 상담 등을 위해 축적된 기업지원사업의 경험과 기업·전문가 네트워크가 있고,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에 위탁 필요

다. 위탁 사무 내용: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사업 업무 전반

1) 운영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창업기업 발굴

3) 지원센터 시설 사용 허가 심사 및 허가

4) 사용료 징수 및 납입 관리

5) 사용인에 대한 관리 감독

6) 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 관리 등

라. 위탁시설

1) 소 재 지: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2) 규 모: 건축면적 1,940㎡, 연면적 9,987㎡ (지하1층 ~ 5층)

마. 위탁기간: 2027. 1. ~ 12.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500백만원(시비)

(단위: 백만원)

계	사업비	간접비	인건비	비고
500	380	20	100	

사.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 ※2026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26.8.18.)

아. 위탁구분: 재계약 (수탁기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자. 부서의견: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 제15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나. 예산조치: 2027년도 예산편성 예정

다.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2026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라. 성과보고서 및 성과평가 결과, 감사결과: 안건 참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창업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기술 사업화 연계를 촉진하는 핵심 거점인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그동안 축적된 운영 노하우와 풍부한 기업·전문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하여 시설을 관리하고 입주·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운영 과정에서는 면밀한 성과 점검을 바탕으로 입주기업 지원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입주업체 선정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